

대구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63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

담당변호사 서수완, 이해원

변론 종결 2020. 10. 7.

판결 선고 2020. 10.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967,31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통영시 C 지상 다세대주택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118,181,818원을 포함하여 1,3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원고에게 합계 1,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부가가치세를 진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다세대주택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다. 원고는 이를 알고 진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환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과세 대상 부분에 관한 311,35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3,045,454원, 부가가치세 28,304,546원)와 면세 대상 부분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98,772,727원)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과세 대상 부분에 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28,304,546원을 환급받았다.

마. 피고는 진주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였고, 진주세무서는 2015년 2기 분에 대하여 가산세 3,505,897원을 부과한 뒤 16,996,155원을 환급하고, 2016년 1기분에 대하여 가산세 14,165,496원을 부과하고 기존 매입세액 공제액 54,314,511원 또한 납부를 명하며, 2017년 1기분에 대하여 가산세 6,659,010원을 부과하고, 46,228,314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진주세무서는 총 환급금 63,224,469원 중 피고의 체납액에 충당된 54,314,511원을 뺀 나머지 8,909,958원을 피고에게 실제로 돌려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9. 16. 원고 앞으로 8,909,9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9,393,433원을 변제공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 금 제573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받거나 피고가 변제한 돈을 뺀 나머지 80,967,315원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진주세무서의 2019. 7. 22.자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도급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면세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공사대금의 1/11 해당액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만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하고 나머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은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각 작성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한다면 공평의 원칙이나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빠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사업 및 비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위하여 매수한 건축 자재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공사대금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가 환급받은 63,224,469원 중 피고가 실제로 돌려받은 8,909,958원을 제외한 나머지 54,314,511원은 기존 매입세액 공제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된 세금의 납부에 충당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피고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가 2018. 6. 11. 면세 대상 부분에 관하여 공급가액 898,772,727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원고의 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처음 당사자의 의사가 면세 대상 부분의 공급가액을 위 금액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선